2020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제2차 회의록

▣ 회의일시 : 2020. 3. 20 (금요일), 14:00
▣ 장　　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 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】		
1	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‘나전장(끊음질)’ 명예보유자 인정	
【검토사항】		
1	‘사경장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	
2	‘배첩장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	
3	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 종목의 조사자 검토 및 추천	
4	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	
5	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선정 검토	
6	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계획(안)	
【보고사항】		
1	‘채화칠장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연구 조사 결과	